

#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

## 제 1 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본 지침은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 2 장 교육과정의 편성

**제2조(교육과정 편성)**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편성된 교육과정은 2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본 지침 제5조에 의거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교육과정은 2년 단위(4학기)로 편성하고 학기단위 편성 및 개정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3조(교육과정 편성원칙)** ① 교육과정은 해당년도에 실제로 개설할 수 있는 적절한 수의 교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과정의 이수구분은 전공필수, 전공선택, 공통과목으로 한다.

③ 수업은 이론, 실기, 실습, 복합(이론+실기, 이론+실습 등)으로 구분하며, 한명 또는 여러 명이 한 강좌를 담당할 수 있다. 단, 여러 명이 한 강좌를 담당하는 경우 실제 강의를 담당할 만큼 시수를 적용한다.

④ 과목당 개설학점은 3학점을 원칙으로 하며, 예체능계 실기과목 및 특수한 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⑤ 이론 및 실기강의는 주당 1시간씩 15주 이상 강의하는 경우, 실험실습강의는 주당 2시간씩 15주 이상 강의하는 경우를 1학점으로 한다.

⑥ 수업유형별 책임시수 인정은 주당 1시간 15주 이상 강의하는 경우 「이론 : 실험/실습 : 실기 = 1 : 0.5 : 0.8(실기강좌는 전임교원 예체능계열에 한함. 음악학과 개인레슨 0.5)」로 한다.

⑦ 학부 개설 교과목은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6학점까지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사항은 각 학과별 교육과정 세부사항으로 정한다.

⑧ 대학원 타 학과 개설 교과목은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사항은 각 학과별 교육과정 세부사항으로 정한다.

⑨ 필요한 경우 선수학점으로 이수할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.

⑩ 학과간에 교과목명이 동일한 교과목은 학과별로 교육과정에 각각 편성할 수 있으나, 강좌를 개설할 시 학과간에 합의하여 합반강좌로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⑪ 교과목의 수준에 따라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교과목으로 분류하여 편성하되, 필요한 경우 석·박사학위과정 공통으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.
- ⑫ 학과(전공)에 따라 전 교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는 영어전용 트랙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교육과정의 운영

**제4조(교육과정의 운영)** ① 각 학과의 강좌개설은 해당년도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하여야 한다.

- ② 각 학과는 1학기 개설과목에 대해서는 전년도 12월 말까지, 2학기 개설과목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 학과 교과목 개설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개설강좌(영어강의 포함)의 최소 수강인원은 3인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학과특성상 부득이하게 수강생 3인 미만의 강좌를 개설할 경우 담당교수 시수를 수강인원수로 적용한다.
- ④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은 2년 1회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, 개설한 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 이내에는 재개설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전공필수 과목의 경우 필요시 1,2학기 모두 개설할 수 있다.
- ⑤ 개설강좌는 1교수 동일학기 1강좌를 원칙으로 한다.
- ⑥ 각 학과의 매학기 개설과목 중 영어강좌는 50%이상 이 되도록 개설함을 권장한다.
- ⑦ 이론수업 개설강좌의 담당교강사가 전임일 경우 1시간 30분씩(3시간 강좌기준) 구분하여 강좌운영을 권장한다.
- ⑧ 강좌개설은 월-금 주간에만 하며 야간(18:00이후) 및 토요일에는 강좌개설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된 야간강좌 및 토요일 강좌는 학과장 책임하에 운영하여야 한다.
- ⑨ 과목강사는 전임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강사 위촉시는 시간강사 규정을 참조하여 우수강사를 추천하여야 한다.

### 제 4 장 교육과정의 개정

**제5조(교육과정 개정 및 절차)** ① 대학원의 각 학과에서는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4년에 1회 교육과정을 개정하고, 2년 1회 보완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편성된 교육과정은 2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개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 있다.
- ③ 부득이하게 교육과정에 없는 신규과목을 개설하거나 교과목명, 이수구분, 수업구분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차기학기 개강 최소 3개월 전에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교육과정 개정절

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교육과정 개정 시 강의내용이 유사한 교과목의 명칭변경은 불허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